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행이용권 지급대상에 다자녀가구 및 청년 추가 >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32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여행이용권 지급대상에 다자녀가구 및 청년 추가(안 제47조의5 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10. 22.

다. 회 부 일: 2024. 10.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관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최근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및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에 대한 관광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물 없는 관광 활동 보장·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 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제1항).

Ⅲ. 검토의견

1. 여행이용권 지급대상에 다자녀가구 및 청년 추가(안 제47조의5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여행이용권 지급대상인 관광취약계층에 현재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저소득층 외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및 ‘청년’을 추가함(안 제47조의5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및 청년-----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 형식의 ‘여행이용권’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행이용권’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²⁾에 따른 ‘문화이용권’에 포함되어 문화, 체육 분야 바우처와 함께 지급되고 있으며,³⁾ 동 이용권의 재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복권기금으로서 전체인구 대비 지급률과 지원금액 등은 매년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와 협의로 결정됨.⁴⁾

- 1)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과 여행이용권의 지급 대상인 관광취약계층(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은 동일함.
- 3) 전국 문화·체육·관광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
 - 체육: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 관광: 교통수단(철도, 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등
- ※ 문화누리카드 중 관광분야 이용액 현황

	총 이용금액	관광분야 이용액	
		이용금액	비율
’22년	2,270.4억	455.3억	20.1%
’23년	2,515.2억	530.9억	21.1%
’24년	3,046.4억	650.4억	21.3%

-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 2024년에는 약 258만명에게 지급되었고, 1명당 연간 한도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제한 없이 13만원 이내였음.⁵⁾

○ 그런데 ‘여행이용권’의 지급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⁶⁾ 육아·돌봄 또는 취업난 등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다자녀가구, 청년 등에게도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2023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국민 1회 평균 관광여행 일수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1.82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⁷⁾

-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교육비, 식비 등 육아비용의 부담이

사용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2020년: 171만명 대상 9만원씩 지급, 2021년 197만명 대상 10만원씩 지급, 2022년 263만명 대상 11만원씩 지급, 2023년 267만명 대상 11만원씩 지급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7) ※ 국내여행 중 가구소득별 1회 평균 관광여행 일수(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여행조사, p.73.)
100만원 미만 1.35회 / 100~200만원 미만 1.39회 / 200~300만원 미만 1.43회 / 300~400만원 미만 1.51회 / 400~500만원 미만 1.56회 / 500~600만원 미만 1.59회 / 600만원 이상 1.6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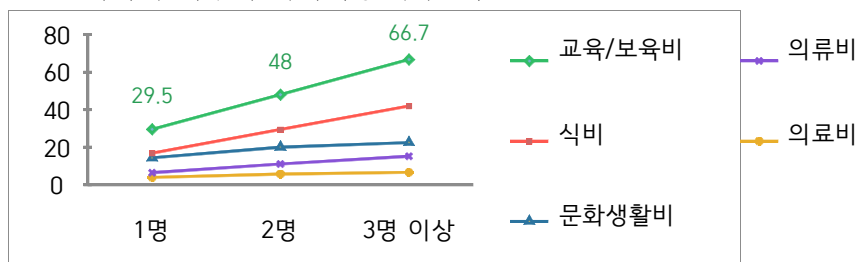
높아 상대적으로 관광활동 등 문화생활비 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⁸⁾ 저출산 문제⁹⁾ 등을 고려할 때 주거·양육·교육 외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 ‘청년’의 경우에도 취업난, 고용불안 등을 사유로 인해 소득수준이 떨어지면 관광활동을 향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여행이용권’ 지급대상인 관광취약계층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관광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이 여행이용권 지원대상인 ‘관광취약계층’을 ‘다자녀 가구와 청년’으로 확대한다는 측면에 대해 그 범위와 지원의

8) 2020년 다자녀 가구의 육아비용 부담 비중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9)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 통계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출산율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78	0.721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0) 2024.12.31. 제420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어,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 활동 지원의 대상이 ‘다자녀가구’로 확대되었음(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

적정성에 관해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른 관광활동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을 낮은 소득으로 인한 제약, 신체장애 등에 따른 물리적 제약 등으로 볼 때, 다자녀가구와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현행법에 따른 여행이용권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둘째, 일반적인 의미의 ‘다자녀가구’와 ‘청년’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동일하게 관광활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관광취약계층’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저출산’, ‘취업난’ 등을 사유로 관광활동을 영위하기에 소득 수준이 충분하거나 활동에 제약이 없는 ‘다자녀가구’와 ‘청년’ 까지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기회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이외 다른 계층에서의 역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음¹¹⁾.

- 관련하여, 관광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다자녀가구’와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1) 특히, 청년의 경우 ‘2023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회 평균 관광여행 일수가 20대 1.59일, 30대 1.65일로 전 연령 평균 1.57일에 비해 낮지 않은 편이고, 19세인 청년의 경우 문화소외계층으로서 ‘여행이용권’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지급받고 있음.

[‘다자녀가구’ 및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 입법례]

법령	조 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u>다자녀 가구</u> 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u>다자녀 가구의 요건</u> ,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u>국토교통부령</u> 으로 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u>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u> 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u>3명 이상</u> 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u>학자금대출 이자</u> 를 면제한다.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u>다자녀 가구의 자녀</u>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7] 이자면제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u>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u>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u>19세 이상 34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취약계층’에 ‘다자녀가구’, ‘청년’을 포함하여 여행이용권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수, 자녀의 연령상한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 규모와 소요 예산을 산출하기 어려움.¹²⁾
 -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보는 경우, 2024년 기준 1,044만명으로 상당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³⁾

12) 2022년도 기준 다자녀가구 수

연령	2자녀	3자녀 이상
전체	2,245,000	456,000
5세미만	597,000	138,00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13)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044만명에게 ‘문화이용권’을 지원할 경우 1조 3,572억원(10,440,000명 *130,000원=1,357,200,000,000원)이 소요됨.

※ 문화이용권 사업현황(2022~2024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266,96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제취약계층 263만명 대상 11만원씩 지급
'23년	298,3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제취약계층 267만명 대상 11만원씩 지급
'24년	340,28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제취약계층 258만명 대상 13만원씩 지급

문 의 처
02)6788-5377